

의안번호	2217013
의 퇴 인	권향엽 의원
회 답 일	2026. 6. 11.
추계번호	26A1065

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조(정의)	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4. “산업위기지역”이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통칭하는 지역을 말함	의무규정
2	안 제15조(자금 지원)	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(이하 “위기지역기업”이라 한다)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 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융자 및 보조할 수 있음(제2항) 2.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68조에 따른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-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자금 지원이 「산업발전법」 제33조에 따라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부장관에게 그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(제6항) -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자금 지원이 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등의 자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금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금으로부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(제7항)	재량규정
3	안 제16조(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)	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지역에 도로,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 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지역에 있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산업단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4	안 제17조(인력양성 지원 등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지역 내 근로자,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음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5	안 제18조(연구개발 활동 지원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<u>산업위기지역</u> 내 연구개발,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·기관·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6	안 제19조(지역 산업 컨설팅 지원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지역기업의 경영·기술·재무·회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게 할 수 있음(제1항) 1. <u>산업위기지역의 사업자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</u>	재량규정
7	안 제20조(지원사업의 연계·우선지원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<u>산업위기지역</u>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연계하여 수행하고,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8	안 제20조의2(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책무)	<u>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에게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(제1항)</u>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2조(정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5조(자금 지원)	
3	안 제16조 (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)	
4	안 제17조(인력양성 지원 등)	
5	안 제18조(연구개발 활동 지원)	
6	안 제19조(지역 산업 컨설팅 지원)	
7	안 제20조(지원사업의 연계·우선지원)	
8	안 제20조의2 (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책무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용어 정의 신설, 지원 확대 등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
 - (안 제2조)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통칭하는 ‘산업위기지역’의 정의를 신설
 - (안 제15조제2항·제6항·제7항) 지원 사업 추진 재원을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,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,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등의 자금으로 확대
 - (안 제15조제1항·제16조·제17조·제18조·제19조·제20조) 기존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금 지원, 기반시설 우선 지원, 인력양성·연구개발·컨설팅 지원 사업 등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
 - (안 제20조의2)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에 협조·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
- 개정안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, 지원사업의 재원을 확대하며, 산업통상부의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가 지원을 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
 -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6년 5월 기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4곳(포항, 광양, 여수, 서산),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0곳임

[표 1]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현황(2026.5월 기준)

구분	지역(주된 산업)	지정기간
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	전남 여수(석유화학)	2025.5.1.~2027.4.30.
	경북 포항(철강)	2025.8.28.~2027.8.27.
	충남 서산(석유화학)	2025.8.28.~2027.8.27.
	전남 광양(철강)	2025.11.20.~2027.11.19.
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	없음	

자료: 산업통상부

-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는 산업통상부의 ‘지역산업위기대응’ 사업을 통해 운전·시설 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 사업, 맞춤형(기술·사업화, 인력양성)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고, 2026년 제1회 추경예산 기준 246억 6,700만원(이차보전 지원 151억 4,500만원, 맞춤형 지원 90억원, 사업관리비 5억 2,200만원)이 편성되어 있음
-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우 법 제15조제1항¹⁾·제16조²⁾·제20조³⁾·제21조⁴⁾·제22조⁵⁾·제23조⁶⁾·제24조⁷⁾에 따라 자금 지원, 기반시설 우선 지원, 지원사업 연계·우선지원, 국·공유재산의 사용료·대부료 감면, 조세·부담금 등의 감면, 산업용지 분할에 대한 특례 적용,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 등의 지원이 추가로 실시됨
 - 다만, 2026년 5월 현재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없으므로 지원사업의 실적, 소요 예산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없음
- ※ [참고자료]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사업
-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도 자금 지원(안 제15조제1항), 기반시설 우선 지원(안 제16조), 지원사업 연계·우선지원(안 제20조) 등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, 자금 지원의 재원을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,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,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

-
- 1) 제15조(자금 지원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기업(이하 “위기지역기업”이라 한다)이 설비투자, 공장의 신설·증설, 경영혁신, 업종전환 및 운전자금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 <후 략>
 - 2) 제16조(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도로,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 <후 략>
 - 3) 제20조(지원사업의 연계·우선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산업기반 구축, 기술개발, 인력양성, 창업, 판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연계하여 수행하고,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 - 4) 제21조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사용료·대부료 감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기업이 사업을 신설·증설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사용료·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 - 5) 제22조(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.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.
 - 6) 제23조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관한 특례)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건축물이 없는 산업용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9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.
 - 7) 제24조(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) 국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보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등의 자금으로 확대(안 제15조제2항·제6항·제7항)할 경우, 지원사업으로 인한 재정지출 규모가 현행 수준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

- 개정안의 조문 중 안 제15조(융자 및 이차보전)·제17조·제18조·제19조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은 현재 법 제8조제5항⁸⁾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도 실시하고 있는데, 개정안의 시행으로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

□ 다만, 현 시점에서 향후 지정될 산업위기지역과 지원사업의 내용, 규모, 대상 등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함

- 현재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없어 그에 따른 지원사업의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없으며, 확대될 지원 사업의 규모, 대상과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한 구체적 기초자료가 부재함

□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8) 제8조(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)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자금·융자 등 금융·재정 지원
2.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사업화 지원
3. 국내 판매, 수출 지원과 경영·기술·회계 관련 자문
4.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실직자·퇴직자의 재취업교육 등 고용안정 지원
5. 그 밖에 산업위기의 선제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박선아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선아	02-6788-4652	sunapark@nabo.go.kr

[참고자료]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사업

지원사업	대상	지원내용	2026년 예산 (백만원)
이자보전 지원	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,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주된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·후방 산업 영위 중소·중견기업	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기업당 최대 15억원 대출 후 이차보전 (이자보전율 운전자금 3.0%p, 시설자금 1.5~2.0%p)	15,145
맞춤형지원(기업지원, 인력양성)	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,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주된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·후방 산업 영위 기업, 근로자 등	기업지원(기술지원, 사업화지원), 인력양성 (연구개발·특허 창출 전략 등 교육, 실습교육)	9,000
자금 지원, 기반시설 우선 지원, 지원사업 연계·우선지원, 국·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, 조세·부담금 감면, 국고 보조금 인상지원 등	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주된산업 영위 기업	—	—

자료: 산업통상부